

「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(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), 지역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」에 대해
- 나. 금번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전문성과 사업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0. 01. 01 ~ 2021. 12. 31.(2년간)
- 사업비 : 485백만원 (* 2019년 885백만원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
-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·보건소 기술지원
 -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지원
 - 지역여건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및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·환류

-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
 - 서울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
 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원 및 결과 환류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및 교육·훈련
 - 서울시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계획 및 운영
 -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
 -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
 - 보건사업기획 교육, 사업수행 전략 등에 대한 자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
-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
 - 서울시 지역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
 -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
 - 지역 건강문제, 사업성과 진단 등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
-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 지원(신체활동, 절주, 영양, 비만) 및 기타 서울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
-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※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기술지원단 위탁 현황
 - 1차 : 2010.04.16.~'10.12.31 (공개모집,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)
 - 2차 : 2011.03.10.~'11.12.31 (공개모집,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)
 - 3차 : 2012.03.29.~'13.02.28 (재계약,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)
(2012.12.12.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의)
- ※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(2013년)
 - 4차 : 2013.04.11.~'14.02.28 (재계약,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)
(2013년.12 18.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)
 - 5차 : 2014.04.15.~'17.02.28 (재계약,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)
(2016.6.20. 268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)
 - 6차 : 2017.03.01.~'19.12.31 (공개모집,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영양, 비만관리 등 13개 사업영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민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,
-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, 동법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조순옥(☎ 2133-7571)